

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
환경수자원위원회 선배 · 동료 위원 여러분!
구로구 제2선거구 출신
더불어민주당 이호대의원입니다.

-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,
13명의 동료의원들께서 동참해주신
「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먼저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
말씀드리겠습니다.

- 현재 서울시는 공항 주변 주민들이 겪는 항공기소음 피
해보상을 위해 항공소음 영향도(WECONL) 75이상인
지역에 한해 각종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- 그러나 항공소음 영향도가 70이상 75미만의 소음대책 인근지역은 비슷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피해지원 혜택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.
 - 이에 따라 소음대책 인근지역까지 피해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 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, 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- 감사합니다.